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대민활동비 및 수당 등의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함천군

내 용

1. 대민활동비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대민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민활동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는 경우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파견, 휴직 기간에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월중에 발령 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 근무자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기간(2016. 11. 14.~11. 30) 동안 경상남도 본청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대민활동비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파견자의 경우 파견 받는 기관이 대민활동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민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기 교육훈련, 육아휴직 등 파견 또는 휴직자에게 해당기간 동안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파견·휴직 발령 또는 복직하는 월에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정액(50,000원)을 지급하는 등 경상남도 본청, 창원

시,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등에서 총 201명에게 71,966,57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2.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은 지정된 기관 또는 해당업무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 따르면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9조에는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5조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은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기간(2016. 11. 14.~11. 30) 동안 경상남도 본청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의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의 경우 휴직 또는 파견⁴⁾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발령일 기준으로 시작 및 복귀하는 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등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 87명에게 11,796,11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4) 정액급식비는 직무관련 국외파견인 경우에 해당

시간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인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액분(10시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본청, 함안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 21명에게 7,490,39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3.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르면 강등·정직·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휴직인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휴직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를 공제하며, 같은 조례 제25조에서는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그러나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에서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복무조례의 산식에 따라 연가 가능한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복무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총 60명에게 연가보상비 17,278,85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결국 대민활동비 및 각종 수당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번	항목	인원	금액(원)	비 고
1	대민활동비	201	71,966,570	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2	시간외 수당	21	7,490,390	도 본청, 함안군,
3	위험수당	7	913,990	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4	특수직무수당	18	4,680,300	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5	정액급식비	62	6,201,820	도 본청,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6	연가보상비	60	17,278,850	도 본청,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
	합 계	369	108,531,920	

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밀양시장, 함안군수, 합천군수는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가 규정을 벗어나 부당하게 지급된 108,531,920원([확인서]에 따른 기관별 해당액)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민활동비 및 각종 수당 업무처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